제294회대구광역시의회(임시회)

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차(부록)

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

【검토보고서】

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○ 발의일자 : 2022년 7월 13일

O 발 의 자 : 류종우·허시영·박소영·윤영애·전경원·임인환·김재우 의원

O 회부일자 : 2022년 7월 13일

2. 제안이유

○ 민선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'대구도시공사'를 '대구도시개발공사'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공공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고, 통합 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조성 등 미래공간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근거를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O 가. 제목제명 변경(안 제명)
 - 「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 - → 「대구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명칭 변경(안 제1조, 안 제2조)
 - 대구도시공사 → 대구도시개발공사
- O 사업범위에 통합 신공항 건설 등 미래공간 개발사업 추가(안 제7조)
 -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사업

O 부칙

-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등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'대구도시공사'의 명칭을 '대구도시 개발공사'로 변경하고, 대구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「국방・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방・군사시설사업을 추가하여 대구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명 및 안 제1조, 안 제2조에서 "대구도시공사"를 "대구도시 개발공사"로 변경한 것은 개발사업의 용지조성과 주택건설공급 등 도시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대구도시공사 역할을 보다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됨.
- 안 제7조제1항제15호에서는 대구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「국방·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사업을 신설 하였는데,

이는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도심 공간 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도시의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도시공사의 기능이 확대됨은 물론 지역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
○ 부칙 규정에서는 시행일,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효력발생 및 변경사항에 대한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임.

□ 이상으로, **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**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